

100%로 합격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

# LIFE WITH 자격시험



## 핵심 요약집

**LIFE WITH**



# 목 차

## Part 1. 보험이론·윤리

- 01. 모집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규범 03p
- 02. 손해보험 기초이론 05p
- 03.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06p

## Part 2. 보험법규

- 01.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10p
- 02.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사례 15p

## Part 3. 손해보험

- 01. 화재보험의 이해 17p
- 02. 배상책임보험의 이해 20p
- 03. 특종보험의 이해 21p
- 04.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22p
- 05. 연금보험저축의 이해 24p
- 06. 퇴직연금의 이해 25p
- 07. 자동차보험의 이해 26p

## Part 4. 제3보험

- 01. 제3보험의 개요 및 특징 33p
- 02. 상해보험의 이해 34p
- 03. 질병보험의 이해 37p
- 04. 간병보험의 이해 39p

핵심요약

Plus Tip!

01. 모집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규범

4문항

1. 보험의 모집

가. 모집이란?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 체결을 **중개** 또는 **대리**하는 것

- 1) 중개하는 자 : 설계사, 중개사
- 2) 대리하는 자 : 대리점

※ 대리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함

나.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

- 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, 보험회사 임직원

구분	계약 체결권	고지의무 수령권	보험료 수령권	등록기관
설계사	X	X	X	금융위원회(손보협회 위탁)
대리점	O	O	O	금융위원회(손보협회 위탁)
중개사	X	X	X	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 위탁)

2. 보험설계사

가. 등록요건 :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**1년** or 보험관계 업무에 **1년 이상** 종사자

- 1) 전속설계사 : 손보사, 생보사 중 1개 회사만 영위하는 설계사
- 2) 교차설계사 : 손보사 1개 + 생보사 1개를 함께하는 설계사(1사 전속 예외 제도)

나. 설계사 등록제한 → 신용불량자는 등록제한 해당자가 아님
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등록 취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후 **2년** 미경과자
- 벌금 이상, 등록 취소 **2년** 경과 / 보험료 유용 **3년**이 지나야 등록 가능

다. 보험설계사 등록과 말소

- 등록은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/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하거나 **직접 말소신청** 가능
- 일사전속의 원칙에 의해 타 보험회사로 이직할 경우 **말소**해야 가능
- 본인의 직접 말소절차  
: 보험회사에 해촉 신청 → 보험회사 위촉계약 종료 → 증빙서류 지참 보험협회 방문 말소 신청 → 타 보험회사 이직  
※ 직접 말소시 필요서류 : **해촉증명서 원본, 내용증명우편(발송 후 10일 경과) 원본, 신분증**



오답유형

- 설계사는 계약을 대리하는 자이다. (X)

- 대리점만 계약체결권, 고지의무 수령권, 보험료수령권 다 있음 (설계사와 중개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)
- 단, **보험회사 임원 중 대표이사, 사외이사, 감사, 감사위원은 보험모집 불가**

- Z생명보험 설계사가 A손해보험 설계사 영위시 교차설계사이다.

- 등록 취소 후 25개월 경과자 ⇒ 등록가능

출제유형

- 직접 말소 시 필요서류가 아닌 것은?  
- 설계사 등록증 원본



오답유형

- 교차설계사의 경우 전속보험사에서 말소되면 나머지는 자동 말소된다. (X)
-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타 보험사로 이직할 수 있다. (X)

## 핵심요약

## Plus Tip!

### 3. 보험대리점 (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체결 가능, 회사 수 제한 없음)

#### 가. 보험대리점의 분류

- 1) 영위업종별 분류 : 전업 / 겸업
- 2) 유형별 분류 : 전속(1개 회사) / 비전속(2개 이상)
  - 개인대리점 = 직접업무폐지 가능(先 업무폐지, 後 계약해지)
  - 법인대리점 = (상법)상 회사형태로 운영되는 대리점(보험업법상 X)
  - 법인대리점의 감사는 모집인 겸임 불가(따라서 유자격자 아니어도 됨)
- 3) 운영주체별 분류 : 개인 / 법인
- 4) 영위종목별 분류 : 생명 / 손해 / 제3보험

#### 나. 등록요건

- 개인보험대리점 : 연수과정(등록교육) 이수한 자(등록신청은 2년 이내) or 보험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
- 법인보험대리점 :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
  - 임직원 수 100명 이상인 법인 :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

#### 다. 등록제한 → 설계사 등록제한 해당자 포함

- 설계사·중개사로 등록된 자, 자동차 판매업자(단, 중고차, 수입차 판매업자 등은 가능)
- 화물자동차·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, 재단·사단법인, 자기대리점(자기실적 50/100↑)
- 다른 보험회사 임직원

#### 라. 영업보증금

-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 할 수 없음 → 보험회사에 예탁
- 영업보증금의 규모 : 1억원(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3억원)의 한도 내 정함
  -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영업보증금 예탁의무가 면제

### 4. 재무설계 단계(순서 기억) → ③,⑤번 ( )에 들어갈 용어 찾기

- ① 고객목표확인 → ② 정보수집 → ③ (재무상태 진단) → ④ 계획 작성 → ⑤ (실행) → ⑥ 재평가 및 수정

### 5. 보험모집 프로세스(순서 기억 및 단계별 특징)

- ① 가망고객 발굴 → ② 접근 → ③ 정보수집 → ④ 가입권유 → ⑤ 계약체결 → ⑥ 소개확보 및 증권전달
- 고객과의 첫 만남(접근)
  - 고객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수집 단계(정보수집) : 일반정보, 재정정보, 고객니즈
  - ※ 5대 필요자금 : 생활비, 양육비(교육, 결혼), 주택구입비, 노후자금, 긴급예비자금
  - 최적의 위험보장설계를 제시하는 단계(가입권유)
  - 영업의 최종 목표이자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단계(계약체결)
  - 보험가입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완전판매 실현단계(증권전달)



#### 오답유형

- 직접 업무폐지 시 계약해지 후에 업무폐지를 신청한다. (X)



#### 오답유형

- 초기에 수립된 계획을 끝까지 추진한다. (X)
- 먼저 정보를 수집한 후 우선순위를 파악한다. (X)



#### 오답유형

- 판매프로세스의 각 단계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. (X)



**암기 Tip**  
생활비로 양주마시면 노예된다!

#### 출제유형

- 5대 필요자금이 아닌 것은?
  - 장례비



## 6.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

- 1) 선발대상 : 보험설계사 및 전속 개인대리점만 가능(사용인 X, 비전속 X, **법인 X**)
- 2) 선발요건
  - 근속기간 : 동일회사에 **3년 이상** 재직자
  - 보험계약 유지율 및 소득·실적 : 매 선발연도에 업계와 협의하여 기준 마련
  - 불완전 판매 및 모집질서 **위반 無**
- 3) (손해보험협회)에서 인증, 유효기간은 **1년**(2년 X) → 매년 5~6월경 확정선발
- 4) 별도의 수당 없음, 보험연수원 무상교육, 인증도용시 2년간 신청 금지

## 02. 손해보험 기초이론

### 2문항

### 1. 위험과 관련된 개념(3가지)

- 위험의 정의 : 우연한 사고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
- ⇒ **다수**의 동질적 위험(소수의 X, 서로다른 X) - **우연적** 사고 위험(필연적 X)
- ⇒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(불명확한 위험 X, 측정 불가능한 위험 X)

가. **위태** :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

- 1) **물리적 위태** : 자연적 성질 자체 / (예시) 도로위 빙판, 기름걸레, 휘발유
- 2) **도덕적 위태** : 고의적 행위, 부정, 부도덕, 사기 등 / (예시) 고의방화, 강도, 사기
- 3) **정신적 위태** : 고의는 없으나 부주의, 무관심, 풍기문란, 사기저하 /  
(예시) 졸음운전, 자동차 키를 꽂아두고 주차(정신적인 해이)

나. **사고** :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 (★원인 = 사고)

- ⇒ 폭풍우에 의해 선박 침몰 시 (폭풍우 = 사고)
- ⇒ 화재로 인한 건물 손상 시 (화재 = 사고)

다. **손해** : 경제적·재산적 가치의 상실 또는 감소

## 2. 위험의 분류

가. **객관적 위험** : **대수의 법칙**에 근거한 위험

“보험 사업자나 기업의 위험관리자에게 매우 유용한 개념“

나. **주관적 위험** : 개인의 직감, **통계측정 불가**

다. **순수위험** : 이익의 가능성은 없고 **손해만 발생**, 보험화 가능성 높음

- 우발적으로 발생, 대수의 법칙 적용 / (예시) 상해, 사망, 화재, 교통사고
- 개별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회전체도 동일한 손해 입음

라. **투기위험** : **손해와 이익이 모두 상존**하는 위험 / (예시) 주식투자, 도박, 복권

- 개인은 손해 입어도 사회 전체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음. 보험 불가능

암기 Tip

위태한 사고는 손해를 일으켜~



오답유형

- 순수위험은 모두 보험화가 가능하다. (X) / 위험측정이 가능하고 보험사 담보력이 있는 경우만 가능

핵심요약

Plus Tip!

### 3. 보험의 기본 원칙

- 1) **대수의 법칙** : 동일한 사실을 오랜 기간 대량 관찰시 위험률을 통계적 추출(과학적 보험)
- 2) **수지상등의 원칙** : 순보험료 총액 = 전체보험금 총액과 합치(보험회사의 관점)  
→ “수입=지출”
- 3) **이득금지의 원칙** : **손해보험 고유의 원칙**(인보험에는 無)  
→ **초과보험, 중복보험, 보험자대위와 관련된 개념**(공동보험 X)
- 4) **실손보상의 원칙** :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한다는 원칙 / (예시) **실손의료보험**
- 5) **비례보상의 원칙** : 비례적 책임주의, **안분의 원칙**이라고도 함
- 6) **급부·반대급부의 원칙** : 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(“Lexis의 법칙”이라고도 함. 개개인의 관점)

### 4. 보험의 분류

#### 가.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(강제성 유무)

- 1) **의무보험** :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(대인배상 I + 대물배상), 그 외 **특수건물화재보험,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,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, 유도선업자 배상책임보험, 원자력보험, 다중이용업소화재 배상책임보험**
- 2) **임의보험** : 가입여부는 계약자의 자유의사(대부분의 보험)

#### 나.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

- 1) **기간보험** : 언제부터 언제까지 / 자동차 보험 등 대부분 보험
- 2) **구간보험** : 어디서 어디까지 / **운송보험·적화보험**
- 3) **혼합보험(기간 + 구간)** : **여행자 보험 / 조립 / 건설공사**

#### 다. 위험분담 관계에 따른 분류

- 1) **원보험** : 보험회사가 계약을 직접인수(한화손해보험 = 원보험회사)
- 2) **재보험** : 거대위험 분산을 위함(공장화재, 항공보험, 선박보험 등)
  - **이익에 관한 보험 = 기업휴지보험**(공장 가동 못한 간접손해)
  - **보험업법상 보험의 분류 = 손해보험 / 생명보험 / 제3보험** : (상해, 질병, 간병보험)
  - **상법상 보험의 분류 = 손해보험 / 인보험** : (생명보험, 상해보험)

#### 라.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

- 1) **공영보험** : 국가가 운영(**산재보험, 국민건강보험, 수출보험** 등)
- 2) **민영보험** :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(**상해보험, 자동차보험, 보증보험** 등)

암기 Tip

★ **특, 가, 체, 유, 원, (지), 다**  
→ **체육시간에 가스폭발해도 유도선수는 놀라지 않는다.**

암기 Tip

**구간보험 : 구 · 운 · 적**  
**혼합보험 : 여행 · 조 · 건**

## 03. 보험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

### 2문항

### 1. 보험사기 행위

- 1) 정의 : 보험사고의 발생,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)
  - **연성사기** : 사고는 났으나 과잉청구 / **경성사기** : 의도적, 고의적인 조작
- 2) 보험사기 처벌 : **보험사기방지특별법**에 따라 처벌 → **10년 이하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**
  - 상습범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/ **미수범은 처벌 대상**
  - 이득액이 **5억원 이상**일 때에는 특별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



오답유형

· 사기범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. (X)

핵심요약

Plus Tip!

## 2.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병원)

- 1) 교통사고 환자 외출외박시 의료기관 허락 필요(보험회사 허락×)
- 2) 보험회사의 외출외박기록 열람청구권 인정(환자 동의 없이 가능)
- 3) 의료인이 외출외박 허가,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신 서명 또는 날인
- 4)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/ 외출, 외박 기록은 3년간 보존

## 3. 자동차관리법(정비공장)

- 1) 정비의뢰자의 동의 없는 정비업체의 임의수리 금지
- 2) 정비 전 : 정비견적서, 정비 후 : 정비내역서 교부 의무화
- 3)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

## 4. 음주운전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처벌

- 1)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(특정범죄가중처벌법)

구분	처벌
음주운전 사망사고 시	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음주운전 상해사고 시	1년 ~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~ 3천만원 이하 벌금

- 2) 음주운전 처벌 벌칙(도로교통법 제148조의2)

구분	처벌기준	
1회 위반	0.2% 이상	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/ 1천만원 이상 2만원 이하 벌금
	0.08~0.2% 미만	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/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
	0.03~0.08% 미만	1년 이하 징역 / 5백만원 이하 벌금
2회 위반	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/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	
측정거부	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/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	

- 3) 음주운전관련 면허 행정처벌(도로교통법 제82조, 시행규칙 별표28)

구분	처벌기준
0.03% ~ 0.08% 미만	벌점 100점(면허정지 100일), 사고가 난 경우 면허취소(2년간 면허취득 불가),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면허취소(5년간 재취득 불가)
0.08%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시	면허취소
음주운전 2회 이상	
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	
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아니한 경우 (도주한 경우)	

출제유형

-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가 많은 이유가 아닌 것은?  
 ◊ 병원, 정비업소 등 관련 업계와의 이해 상치(X) → (이해 부합○)  
 \* 상치 = 서로 어긋나다.

오답유형

- 외출/외박기록은 개인의 진료정보  
 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회사  
 에서 열람할 수 없다. (X)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료  
 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·외박 기록  
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입원환자와  
 의료기관이 동일하게 처벌받는다. (X)
- 정비업체는 정비가 끝난 후 정비의뢰  
 자  
 가 요구한 경우에만 정비내역서를 교  
 부  
 하면 된다. (X)

오답유형

-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% 이상  
 0.08% 미만인 경우에는 대인사고가  
 발생하더라도 면허취소는 되지 않는  
 다.  
 (X)
- 혈중알코올농도가 0.08% 이상인  
 경우이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 
 다면 면허취소는 되지 않는다. (X)
-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 사고발생  
 여부를 불문하고 면허취소 된다.



## 핵심요약



## Plus Tip!

## 5. 주요 운전면허 취소 위반사항

- 1) **뺑소니** :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
- 2) **음주** : 혈중알코올농도 **0.03% 이상**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
혈중알코올농도 **0.08% 이상**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
- 3) 음주측정 불응 : 음주를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
- 4) 면허증 대여 :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
- 5) **난폭운전** : 법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때

## 6.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별 벌점 및 범칙금(승용차 기준)

- 1) 주요 교통사고 유형별 벌점
  - 인적피해 교통사고(1명당) ⇨ **사망 : 90점 / 중상 : 15점 / 경상 : 5점 / 부상신고 : 2점**
- 2) 주요 **범칙금**
  - 위반행위(일반도로 / 보호구역)
    - ① 통행금지·제한 위반 및 주·정차위반 : 4만원 / 8만원
    - ② **노인, 장애인 보호구역 주·정차위반 : 4만원 / 8만원**
    - ③ **어린이 보호구역 주·정차위반 : 4만원 / 12만원 (20.11.27시행 과태료 3배 강화)**
    - ④ 속도위반 : 3~12만원 / 6~15만원
    - ⑤ 신호·지시위반 : 6만원 / 12만원
    - ⑥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: 횡단보도 : 6만원 / 12만원, 일반도로 : 4만원 / 8만원
- 3) 주요 **과태료**
  - 위반행위(일반도로 / 보호구역)
    - ① 속도위반 : 4~13만원 / 7~16만원
    - ② 신호·지시위반 : 7만원 / 13만원
    - ③ 주정차 위반 : 4만원 / 8만원 ⇨ 2시간 이상 : 5만원 / 9만원
- 4) 주요 **벌점**
  - 법규위반행위(일반도로 / 보호구역)
    - ① 속도위반 : 0~60점 / 15~120점
    - ② 신호·지시위반 : 15점 / 30점
    - ③ **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: 10점 / 20점**

## 7.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법령

- 1) 교통사고처리특례법
  - 치사에 이르지 않은 치상죄 등에 한해 위반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의 특례를 둠
  - 특례의 예외사항 ⇨ 잘못하고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 및 유기,  
중양성 침범, **제한속도 20km/h 초과** 등
- 2) 도로교통법
  -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
  - 일반도로에서도 **뒷자석 안전띠 착용**을 의무화, **자전거 음주운전 단속**시 처벌 규정 신설
- 3)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특정범죄가중법')
  -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**위험운전치사상죄**
    - ⇨ 상해 :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
    - 사망 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**



## 오답유형

• 일반도로에서 20km/h이하 속도위반  
반  
시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.(X)

## 출제유형

• 어린이/노인/장애인 등 보호구역 내  
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시 벌점은?  
(승용차 기준) → 20점

## 개정유형

• 故 김민식 어린이의 사고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필요성이 대두, '도로교통법 개정안'이 시행(2020.03.25)  
오는 2021.10.21 시행예정, 이 법률을 위반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(料)에 처해지게 된다.



핵심요약

Plus Tip!

### 7.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법령

4)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특정범죄가중법')

• 故김민식 어린이 사고로 촉발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,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, 별도의 가중 **처벌을 신설**

**피해자인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**

▷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
**상해를 입은 경우**

▷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

### 심화학습

▷ 주요 법규위반별 범칙금(승용차 기준)

위 반 행 위		일반도로	보호구역
통행금지·제한 위반		4만원	8만원
<b>노인, 장애인 보호구역 주·정차 위반</b>		<b>4만원</b>	<b>8만원</b>
<b>어린이 보호구역 주·정차 위반</b>		<b>4만원</b>	<b>12만원</b>
속도위반	60km초과	12만원	15만원
	40~60km/h	9만원	12만원
	20~40km/h	6만원	9만원
	20km/h 이하	3만원	6만원
신호·지시위반		6만원	12만원
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	횡단보도	6만원	12만원
	일반도로	4만원	8만원

핵심요약

Plus Tip!

01.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

4문항

1. 보험계약 관계자

가. 보험회사(보험자)

- 주요의무
  - ①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⇨ 위반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**3개월 내 취소** 가능
  - ② 보험증권 교부의무
  - ③ 청약의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 전 담보
    - ⇨ **승낙의제** : 통지하지 않고 30일 경과시 승낙한 것으로 간주
  - ④ 보험금 지급의무

나. 보험계약자 : 계약의 당사자 / 보험료 납입의무를 가짐(만기환급금 수령자)

- **보험수익자를 지정**, 변경할 권리를 가짐(피보험자 동의)
- 주요의무
  - ① 보험료 납입의무
  - ② 계약 전 알릴 의무(상법 제651조) : **고지의무** ⇨ 위반시 보험회사는 계약**해지권**을 가짐
    - (a) 고지의무 당사자 : 계약자, 피보험자, 이들의 대리인(보험수익자×)
    - (b) **고지의무수령권자 : 보험회사 / 대리점 / 보험의(醫)**
  - ③ 계약 후 알릴 의무 : **통지의무** ⇨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료 재조정 가능 & 계약**해지권**을 가짐
  - ④ 보험사고 발생을 알릴 의무 ⑤ 손해방지의무 ⑥ 위험변경·증가 통지의무

다. 피보험자 :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(손해보험)

라. 보험수익자 : 사망보험금 수령자(인보험에만 있음)

2. 피보험이익의 요건 : **적법성, 경제성, 확정성(영구성×)**

- 1) 손해보험만의 개념, 상법에서는 '보험계약의 목적'이라고도 함
- 2) 현존하는 이익뿐 아니라 장래의 이익도 피보험이익으로 가능
- 3) **보상최고한도는 보험가액 기준**으로 결정(보험가입금액×)
- 4) **초과·중복보험을 판정**하는 기준, 보험의 도박화 방지(사행계약성)
- 5) 동일목적물에 다양한 피보험이익 존재 가능

3. (영업)보험료의 구성

- 영업보험료 = **순보험료 + 부가보험료** (★순·두·부)
  - 1) 순보험료 = **위험보험료(보험금 자원) + 저축보험료(만기금, 해지금 자원)**
    - ★ 위험하면 사고 나고 보험금 지급 / 저축하면 이자 붙여 만기금 지급
  - 2) 부가보험료 = **신계약비 + 유지비 + 수급비**
    - (a) 신계약비 : 초년도에만 사용(계속 발생×), 설계사 수당으로 사용
    - (b) 유지비 : 보험계약을 유지·관리하는데 사용(직원 인건비, 점포유지비)
    - (c) 수급비 : 계속보험료 수급에 사용(수급수당, 은행수수료)



오답유형

- 피보험이익은 현존하는 이익에 한하며, 장래의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.(X)
- 확정성이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.(X)
  - ⇒ 경제성 (O)
  - '보험의 목적'과 '보험계약의 목적'
- ① 보험의 목적
  - = 보험에 부처지는 대상 (가입한 대상, 즉 건물이나 신체)
- ② 보험계약의 목적
  - = 피보험이익(손해보험만의 개념)



암기 Tip

영업보험료 = 순·두·부  
 부가보험료 = 신·유·수



오답유형

- 점포유지비는 신계약비에 포함된다.(X)

핵심요약

Plus Tip!

### 4. 보험료 계산 3요소 및 손익 3요소

- 보험료 계산 3요소 : **예정위험률**(이재율), **예정이율**, **예정사업비율**
  - 1) 위험보험료 = 예정위험률(이재율) ↔ 실제손해율과의 차이 = 위험률차손익(이재차손익)
  - 2) 저축보험료 = 예정이율 ↔ 실제수익률과의 차이 = 이차손익(이 = 채, 이자)
  - 3) 부가보험료 = 예정사업비율 ↔ 실제사업비율과의 차이 = 비차손익

### 5. 보험사고의 요건

- **불확실성(우연한 사고)**, **발생가능성**, **한정성**, **적법성**(경제성×)

### 6.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

가. **보험가입금액** = **보험계약상 최고한도액** / 보험료 산정의 기준

나. **보험가액** = **법률상 최고한도액** / 인보험은 無 / 손해액 산정의 기초

- 1) 전부보험 : 보험가액 = 보험가입금액
- 2) 일부보험 : 보험가액 > 보험가입금액(비례보상)
- 3) 초과보험 : 보험가액 < 보험가입금액(가액한도 실손보상)
- 4) 중복보험 : 보험가액 < 보험가입금액의 합(가액한도 실손보상)
- 5) 공동보험 :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(인수비율에 따라 보상)

### 7. 보험기간, 보험계약기간, 보험료기간

가. 보험기간(위험기간, 책임기간) : 책임개시일 ~ 종료일까지

★ **책임개시 요건 = 최초보험료 납입**

나. 보험계약기간 : 계약성립일 ~ 소멸일까지

★ 계약의 성립 요건 = 보험회사의 승낙(승낙 = **15일 이내**)

※ 보험기간이 일찍 시작 = **소급보험**, 보험계약기간이 일찍 시작 = **예정보험**

다. 보험료기간 : 보험사고 발생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기간으로

**통상 1년**을 원칙으로 함

### 8. 보험계약의 특성(법적 성질)

- ① **불요식·낙성계약**
- ② **유상·쌍무계약**
- ③ 사행계약
- ④ 상행위
- ⑤ 계속계약
- ⑥ **부합계약**(정형화된 보험약관 제시, 계약자가 포괄적 승인)

출제유형

- 보험료 계산의 3요소가 아닌 것은?  
= 예정이율, 예정해약율

오답유형

- 발생가능한 사고는 보험사고로 적합하지 않다.(X)
-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을 안전하게 증식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제도 이다.(X)  
= 실제 피해만큼 복구하는 개념(O)

출제유형

- 보험사고의 우연성은 당사자 입장에서 불확정하면 성립된다.(O)
- 보험의 본래 기능이 아닌 것은?

오답유형

- 일부보험 가입 시 가입금액에 대한 가액 비율로 비례보상 한다.(X)  
=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비례보상한다.(O)

오답유형

- 보험계약기간은 통상 1년이다.(X)
- 보험계약기간과 보험기간은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.(X)
- 최초보험료 납부는 계약성립과 무관하다.(O)
- 보험계약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.(X)
- 보험은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계약성을 가지지 않는다.(X)

핵심요약

Plus Tip!

### 9. 보험의 성립 요건

-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**청약**과 보험회사의 **승낙**으로 계약이 성립
  - ↳ 최초의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증권의 교부 등은 요건이 아님
  - ↳ 보험증권수령 여부와 계약의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없음
  - ↳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함
- 1) 청약 : 구두로 하든, 서면으로 하든 상관없음(통상 청약서 이용)
- 2) 승낙 : 승낙의 방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제한 없음
  - 회사는 30일 이내 낙부통지(30일 지나면 승낙간주 = 계약 성립)

### 10. 보험계약의 “해지” 사유(고객이 잘못된 경우)

- 1) 계약자,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**고지의무 위반**
- 2) 위험 변경, 증가 관련한 중대한 통지의무 위반
- 3) 상당한 이유없이 사고조사를 거부·회피하는 경우

### 11. 보험계약의 “무효”사유

- 1) **15세미만자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의 사망담보 계약** = (상법 규정)
  - (다만, 심신박약자가 계약체결 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는 가능)
- 2) **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**(단체계약은 생략)
- 3) 계약자, 피보험자, 대리인의 사기로 인한 초과·중복보험(보험수익자의 사기×)
- 4) 이미 발생한 사고
- 5)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 알리지 아니한 경우
- 6) 암보험에서 **대기기간(90일)** 내 암진단 확정된 경우

### 12. 보험계약의 부활 → 장기보험 = 3년 이내, 자동차보험 = 30일 이내

- 1) 부활 요건 : 연체보험료 + 연체이자 + 고지의무 필요
- 2) 부활 후 책임개시 : 약관에서 정한 시점부터

### 13. 청약철회와 계약취소

가. 청약철회 :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**15일 이내** 철회 가능  
(다만, 청약을 한 날로부터 **30일**을 초과할 수 없음)

- 1) 단, 전화·인터넷 등 통신판매 전용상품은 30일 이내 철회
- 2)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 접수 후 지체없이 보험료 환급(장기손해보험의 경우 3일 이내)
- 3) 보험료반환 지연시 : 지체된 기간에 대해 **약관대출이율**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

나. 계약취소 : **3대 기본지킴이(자 / 청 / 약) 미이행**시 계약자가 요구

- 1) **3개월 이내** 계약취소 가능
  - : 장기보험의 경우 ‘기납입보험료 + **약관대출이율**로 계산한 이자’ 돌려줌
  - : 일반보험의 경우 ‘기납입보험료 + **정기예금이율**로 계산한 이자’ 돌려줌
- 2) [자 / 청 / 약] = **자필서명, 청약서부본 전달, 약관교부 및 설명**



오답유형

-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보험계약자의 최초보험료 납부 여부이다. (X)



오답유형

-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시 초과된 부분만 무효이다. (X) → 전부무효
- 이미 발생한 사고를 계약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중 1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유효하다.(X)



오답유형

- 부활의 책임시기는 승인시점부터이다. (X)
- 부활요청 시 보험회사는 이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한다.(X)



오답유형

- 3대기본 지킴이란 자필서명, 증권전달, 약관교부 및 설명이다. (X)

핵심요약

Plus Tip!

14. 보험약관의 종류 →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

가. 보통약관 : 일반적, 보편적 계약조항을 미리 작성

나. 특별약관 : 보통약관을 보완·변경 / 특정위험을 추가

- 1) 약관의 기능 : 동일한 거래조건(차별적×), 거래비용 절감(증가×)
- 2) 약관해석의 원칙 : 특별약관 우선의 원칙, 수기(필체)우선의 원칙, 작성자(보험사)불이익의 원칙  
(분쟁시 회사와 계약자 합의에 따른다.×)
- 3) 약관 변경시 (금융위원회)에 신고 / 원칙적으로 약관의 소급효는 없음  
단, 계약자·피보험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전계약도 소급효 가능

15.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(계약자 ≠ 피보험자)

- 1) 타인의 위임여부는 묻지 아니한다.(반드시 확인×) ⇨ (어차피 자필서명을 받기 때문에)
- 2)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있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하지 가능함

16. 보험목적의 양도

- 1) 양도 당시 양도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유효한 보험계약이 있어야 함
- 2) 보험의 목적은 동산, 부동산 등의 물건과 이 밖에 유체·무체재산도 포함함
- 3) 물권적 양도(채권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까지 이전되어야 함)
- 4) 선박보험, 자동차보험 : 반드시 보험회사의 동의 있어야 승계 가능

17. 보험자대위 →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도입

가. **잔존물 대위** : 보험 목적물에 대한 보험자대위

- 전부멸실, 보험금의 전부지급할 때 성립(→ 돈을 안받으면 물건을 주지 않는다.)
- 권리이전 시기 = 보험금 전액지급시점(사고 발생시점×)

나. **청구권 대위** :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

-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해도 성립
-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대위가능 (손해액 한도 X, 가액 한도 X)
- 제3자의 불법행위 + 채무불이행을 포함 (불법행위만 해당된다. X)

18. 보험사업 허가 →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에 허가

- 1) 법인형태 : 주식회사, 상호회사, 외국보험사에 한함(유한회사×)
- 2) 외국보험사 : 회사형태 제한 없음(외국사 국내지점 = 회사로 봄)
- 3) 허가신청서류 : ① 정관 ② 3년간 사업계획서 ③ 기초서류  
⇨ 기초서류 = (a) 사업방법서 (b) 보험약관 (c)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

오답유형

- 타인을 위한 계약은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해지 가능하다.(X)

오답유형

- 보험목적의 양도에 대한 채권계약만으로 유효하다.(X)
-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승계 가능하다.(X)


오답유형


-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잔존물 대위라 한다. (X)

출제유형

- 허가신청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 
- 보험서류

암기 Tip  
기초가 튼튼하면 사·방이 보험, 보험이다!  
(초성이 '보' 들어가는 것을 찾자!)

 핵심요약

 Plus Tip!

## 19. 자본금과 기금

- 국내 보험회사는 **300억 이상**의 자본금 또는 기금 납입
- 단,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**50억**(외국보험사는 영업기금 30억)

### [보험종목별 자본금]

- 1) 보증보험, 재보험 : 300억
- 2) 자동차보험 : **200억**
- 3) 해상보험 : **150억**
- 4) 화재보험, (배상)책임보험, (상.질.간) : **100억**
- 5) 기술보험 : 50억

## 20.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

- 1) 총 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**100분의 90** 이상을 전화, 우편,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회사
- 2)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
- 3) 통신판매상품의 청약철회는 30일 이내

## 21.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

- 1) 개념 : 손해보험회사가 파산 등과 같은 사유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 의해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
- 2) 적용 범위 : **가입이 강제되는 개인보험계약**(단, 자동차 임의보험 포함)
  - 퇴직보험 외의 법인계약은 제외 (법인계약도 포함된다. X)
- 3) 지급불능 보고 : **손해보험협회장**에게 보고 (금융감독원장 X)
- 4) 기금 출연 : 지급불능 보고서 별도로 정한 금액을 손보험회에 출연
- 5) 보험금 지급 :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한 **5천만원**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
  - 단, 자동차 임의계약은 1인당 1억원 한도 내 지급불능액의 80% 지급

## 22. 보험관련 주요기관

- 1) 보험개발원 : 순보험 요율의 산출 검증 및 제공
- 2) 금융감독원 :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·감독업무 수행
  - **금융분쟁조정위원회** : **금융감독원 내 설치**
- 3) 금융위원회 :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
  - ① 금융정책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
  - ② 금융감독 관련 주요사항 심의, 의결 / 인·허가
  - ③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 - ④ 금융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

### 출제유형

- 자본금 100억으로 영위가 안되는 종목은? (2)
- ① 화재보험 ② 해상보험
- ③ 질병보험 ④ 책임보험

### 오답유형

- 100분의 80 이상 (X)

### 오답유형

-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보호되는 5천만원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. (X)
- 손보사는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여야 한다. (X)

### 출제유형

- 보험회사 파산선고 시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(O)

### 오답유형

- 순보험요율의 산출·검증 및 제공은 보험연수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. (X)
-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다. (X)

핵심요약

Plus Tip!

02.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사례

4문항

1. 모집자 실명제 → 설계사의 소속, 성명, 연락처 기재

2. 상품설명제

- 상품설명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모집종사자가 서명한 후 계약자에게 교부하고, 다른 1부는 계약자로부터 설명들었다는 사실을 서명받아 회사가 보관한다. (설계사 보관×)

3. 보험료 영수제도 → 보험료는 보험기간 시작되기 전에 납입

- 단, 정부나 지자체와 체결시 증권발행 후 1개월 유예(계약 청약 후×)
- 어음은 1개월 내 결제되어야 함 (1개월 경과시 자동부도 처리하고, 이자수취기간은 결제일까지로 한다.)
- 해외에서 송금되는 보험료 수납은 현지관례에 따름

4. 단계별 설명의무

- 1) 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 =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,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,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,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,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
- 2) 보험계약 체결 단계 =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·연락처·소속, 보험계약의 승낙절차, 승낙거절시 거절 사유
- 3) 보험금 청구 단계 = 담당 부서, 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, 보험금 심사 절차, 예상심사시간 및 예상지급일
- 4) 보험금 지급 요청 =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, 지급내역, 보험금 심사 지연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, 보험금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사유 설명

5. 실손의료보험 판매시 준수사항(순서 기억)

- ① 가입설계서 작성 → ② 의료비 조회동의서 징구 → ③ 중복가입 조회 → ④ 비례보상 설명 → ⑤ 청약서 작성

6. 통신판매 상품해지시 확인사항(전화, 컴퓨터 통신)

- 1) 계약자 본인인지 여부(공인전자서명 등 확인)
- 2) 계약체결 전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에 동의했는지 여부(체결 후×)
- 3)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피보험자가 동의했는지 여부



오답유형

- 설계사의 소속, 주민번호,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. (X)



오답유형

- 다른 1부는 계약자로부터 설명 들었다는 사실을 서명받아 보험설계사가 보관한다. (X)



오답유형

- 보험료로 받은 은행어음은 만기가 도래하면 부도처리 하여야 한다. (X)
- 해외 송금시 국내 관례에 따른다. (X)



오답유형

- 모집종사자의 보험계약 체결대리권 존재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에서 설명하여야 한다. (X)



오답유형

- 위자료 지급액이 다른 보험상품에 비하여 낮음을 설명하여야 한다. (X)
- 중복가입시 보험금이 비례분담 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. (O)



오답유형

- 전화를 이용한 계약 해지 시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한다. (X)
-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계약 해지 시 상품설명서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. (X)

핵심요약

Plus Tip!

### 7. 가입설계서 생략 가능한 계약

- ① 단채보험계약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보증보험계약
- ③ 기업성 손해보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3개월 미만 단기계약
- ⑤ 전계약과 동일하게 갱신되는 계약   ⑥ 계속계약

### 8. 상품설명서 생략 가능한 계약 (아닌 것은? ⇨ 3개월 미만 계약)

- ①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계약   ② 갱신계약   ③ 계속계약

### 9. 특별이익제공 금지행위 - [보험업법]

-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 할인  
(기초서류에 근거한,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 ⇨ 금지 아님)
  - 보험료 대납, 이자상당액 대납, 청구권행사의 포기
  - ※ 최초 1년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은 위반 아님
- 1) 특별이익제공 위반 :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  - 2) 무자격 모집자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(과태료 X)
  - 3) 그 외 경유처리 금지 / 자필미실시 / 모집자 실명제 위반 /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인터넷 가입시 유모차(50만원)를 주겠다. = [특별이익제공약속 금지위반]
- 위 계약 체결 후 유모차(50만원)을 지급했다. = [특별이익제공 금지위반]
- 車보험 받고 골프공(5만원) 선물 = [특별이익제공 금지위반]
- 월납 2만원 실손보험 체결 후 상품권(2만원) 지급 = [위반사항 없음]

### 10.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- [자율규제]

#### → 위반시 제재금 부과

- 1)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특별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
⇨ 보험회사가 제공(2백만원 ~ 5천만원 제재금 부과) / 보험설계사가 제공(1백만원 ~ 3천만원 제재금 부과)
- 2) 보험계약 경유처리
- 3) 다른 회사를 모함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
- 4) 무자격 모집행위
- 5) 승환계약  
⇨ 위반시 벌칙 : 자율규제(건당 1백만원 제재금) vs 보험업법(1천만원 이하 과태료)  
\* 경유처리란? A설계사가 체결한 계약을 B대리점이 체결한 것으로 처리  
\* 무자격모집행위란? 화장품 외판원이 체결하여 수당을 제공받는 행위

### 11.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

- 1) 시정권고 : 국가인권위원회 / 시정명령 : 법무부장관
- 2)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3)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 보험차별 신고센터 운영 : (손해보험협회)
- 4) 청약거절 등 차별시 신고 가능자 ⇨ 본인, 대리인(보험사 직원 X)

오답유형

-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시 시정권고는 법무부장관이 한다. (X)
-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시 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이다. (X)



## 01. 화재보험의 이해

2문항

### 1. 화재보험의 물건구분

- 주택물건** :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빌라, 아파트 등 순수주택  
주택비용 중 교습소, 치료소(피아노, 꽃꽂이, 침질, 뜸질, 접골, 조산원)
- 일반물건** : 병용주택, 상가, 콘도미니엄, **오피스텔**, 기숙사, 창고업자 건물
- 공장물건** : 발전소, 변전소, 광업소, “**공장 내 기숙사**”  
※ **폭발, 파열 손해** : 주택물건에만 해당 ⇨ 기본담보(But 일반물건, 공장물건 = 보상×)

### 2. 보상하는 손해

가. 재산손해 : 화재(벼락)에 따른 **직접손해 / 소방손해 / 피난손해**

- 직접손해란? 불에 타고 그을려 생긴 손해, 벼락으로 인한 충격손해
- 소방손해란? 화재진압과정에서 생긴 손해(침수손, 파괴손)
- 피난손해란? 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직접손해, 소방손해

나. 비용손해

- : ① **잔존물제거비용** ② 잔존물보전비용 ③ 손해방지비용 ④ **대위권보전비용** ⑤ 기타 협력비용
- 잔존물제거비용** :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재산손해액 **10% 한도**
  - 나머지(②~⑤)** :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

### 3. 보상하지 않는 손해

- 계약자, 피보험자, 대리인의 **고의, 중과실**(※상해보험은 중과실 보상)
- 화재, 폭발, 파열, 피난 중에 생긴 도난, 분실손해
- 수도관, 수관 등의 **파열손해**(추위로 동파)
- 전기기기의 **전기적 사고**로 생긴 손해(단, 확대된 손해는 보상)  
⇨ 단, **전기위험담보특약** 가입시 보상(전자위험담보특약×)

### 4. 계속계약 보험료 할인 → 95% 적용(5% 할인)

- 할인 조건 : 보험기간이 딱 1년인 계약, **동일 보험회사 & 동일 구내위험 가입**
- 1)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계약 **연 보험요율의 95%**를 적용  
(연 보험요율의 5% 할인)
- 2) 동일 보험목적에 대해 기존계약을 중도해지 후 체결한 새로운 계약은 할인 적용하지 않음

### 5. 장기계약 일시납 할인 → 2년 장기 = 175%, 3년 장기 = 250%

- 할인 조건 :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계약 & 보험료는 일시납에 한함(연납×)
- ① 1년 초과 2년 미만 = 연요율 × **175%** × 2년 계약 단기요율표
- ② 2년 장기계약 = 연요율 × 175%
- ③ 2년 초과 3년 미만 = 연요율 × **250%** × 3년 계약 단기요율표
- ④ 3년 장기계약 = 연요율 × 250%

#### 오답유형

- 화재보험은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, 소방손해, 파손손해 및 도난손해를 보상한다. (X)

#### 출제유형

- 재산손해보험금과 ( )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.  
( )에 들어갈 말은?  
= 잔존물 제거비용
- 재산손해가 아닌 것은?  
= 잔존물 제거비용 (비용손해임)
- 비용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 
= 임시생활비용
- 벼락으로 인하여 냉장고가 파손되었다.  
→ 보상○
- 화재시 가재도구를 앞길에 놓았으나 밤중에 도난당했다. → 보상X
- 갑작스러운 추위로 수도관 파열  
→ 보상X
- 피보험자의 채무자가 악의를 품고 방화 → 보상○



## 6. 주택물건, 일반물건의 경우 80% Co-Insurance 적용

- **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%** 이상인 경우 보험사고시
  -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지급
- **공장물건은 해당되지 않음**

## 7. 자동담보 물건 및 명기 물건

- 1) **자동담보 물건** ◦ 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필요 없음
  - 건물의 **부속물**: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, 대문, 담, 곳간 등
  - 건물의 **부착물**: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, 네온사인, 안테나, 선전탑 등
  - **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**(가재도구)
- 2) **명기 물건**: 보험가입시 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해야만 보상
  - 통화, 유가증권, 인지, 우표 / 귀금속 / 원고, 도안, 소프트웨어 / 옥외에 쌓아둔 동산 등

## 8. 계약 전 알릴 의무(고지의무) → 위반시 해지사유

- 1) 고지할 사항: 건물 소재지, 구조 및 용도, 건물 내 영위직종
- 2) 고지의 시기: **계약 성립 전까지**(성립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×)

## 9. 계약 후 알릴 의무(통지의무) → 위반시 해지사유

- 1) 보험 목적을 양도할 때, 이전할 때
- 2) 건물을 계속하여 **30일 이상**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
- 3) 계속하여 **15일 이상 수선할 때** (30일 이상 수선할 때×)
- 4)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

## 10. 손해방지경감 의무 → 사고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음

- 1) 손해방지의무
  -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
  -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, **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(늘어난 손해)을 손해액에서 빼고** 보험금 지급
- 2) 손해방지통지의무
  -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◦ 손해조사를 위해 보험회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
  - 불성실한 통지로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

## 11. 책임 시기 및 보험금지급기일

- 1)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**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회사의 책임 개시**
- 2) 보험금지급기일: **7일**

### 출제유형

- 고지의무가 아닌 것은?  
→ 계약자/피보험자의 직업, 나이, 학력 등



### 오답유형

-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무효이다. (X)
-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지한다. (X)
- 손해방지의무는 '위험변경, 증가 시 통지의무' 가 아님에 주의!



## 핵심요약



## Plus Tip!

## 12. 화재보험의 특별약관

가. 도난담보 특별약관 : 강도, 절도로 생긴 도난, 파손, 훼손손해를 보상

나. 구내폭발위험담보특약

다.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

- 태풍, 회오리바람, 폭풍우, 해일 보상(폭설, 우박×)

라. 전기위험담보특약

마.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

바.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(신배책)

1) 아래의 특수건물은 신배책 특약이 자동담보

- ① 일반건물 11층 이상, 아파트 16층 이상
- ②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국유건물(500㎡ 이상×)
-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2,000㎡ 이상인 학원, 음식점, 유흥주점
-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3,000㎡ 이상인 병원, 숙박업, 방송국, 농수산물시장, 학교, 공장

2) 1인당 보상한도(사망/부상/후유장해) : 1억 5,000만원 / 3,000만원 / 1억 5,000만원

3) 특수건물은 태풍, 폭풍, 홍수, 해일, 범람 등은 풍수재특약을 가입해야 보상됨

4)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보험가입

## 13.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

1) 주요 가입대상은 23개 다중이용업소 업주

→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

2) 보상범위

: 1인당 보상한도(사망/부상/후유장해) → 1.5억 / 3천 / 1.5억, 재산피해 → 1사고당 10억원

## 14. 재난배상책임보험

1)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

2) 보상범위 : 1인당 보상한도(사망/부상/후유장해) ⇨ 1.5억 / 3천 / 1.5억  
재산피해 ⇨ 1사고당 10억원 한도

## 15. 풍수해보험

1) 정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50%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

→ 총 보험료의 52.4~92%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

2) 대상재해[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]

대상시설[주택(동상 포함), 온실(비닐하우스 포함), 상가·공장(소상공인)]



## 오답유형

- 태풍, 폭풍, 홍수 등 이와 유사한 풍수재로 인한 손해는 특별약관을 추가하지 않아도 보통약관에서 보상한다. (X)




## 오답유형


- 인명피해 발생시 사망 1인당 1억원 한도, 재산피해 발생시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. (X)



## 오답유형

-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도 보험상품 구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. (X)

 핵심요약

 Plus Tip!

## 02. 배상책임보험의 이해

## 1 문항

 암기 Tip

배상청구 = 임전무퇴!

## 1. 손해사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과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

- 1) 손해사사고기준 :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 청구시 보상하는 보험
- 2) 배상청구기준 :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보험
  - 임원배상, 전문인배상 2개뿐
  - ※ 전문인배상책임보험 ⇨ 의사, 변호사, 회계사, 건축사(“사”자 돌림!)

## 2. 임의배상책임보험과 의무(강제)배상책임보험의 종류

- 1) **임의배상책임보험** :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, 생산물배상책임보험, 임원배상책임보험 등
- 2) **의무(강제)배상책임보험** : 가스사고, 유·도선사업자, 체육시설업자, 학원시설 소유자,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,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II,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, **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** 등

## 3. 의무배상책임보험의 종류

## 가.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

- 의무가입 대상 : **가스제조업자, 판매업자, 가스사용자, 가스용기제조업자**  
⇨ **가스용기운송업자는 의무가입 대상 아님**
- 보상하는 손해(대인, 대물) : 사망, 부상, 후유장애(휴업보상금×)

## 나.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

- 등록체육시설업 : 의무가입대상(골프장, 스키장, 수영장, 승마장)
- 신고체육시설업 : 의무가입 아님(**골프연습장, 체육도장, 체력단련장, 당구장**)
- 보험 의무가입대상 : **체육도장업, 골프연습장업, 체력단련장업, 당구장업을 제외한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**

## 다.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II
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무보험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유출에 따라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

## 라.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

-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한 의무보험
- 승강기 사고 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

## 4.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형태로 운영되는 상품

- 시설소유관리자배상 / 도급업자배상 / 경비업자배상 / 주차장배상 / 차량정비업자 배상

## 출제유형

- 손해사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것은? = 임원배상 책임보험
- 의무배상책임보험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

## 개정유형

-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: 동물보호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써 맹견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

## 출제유형

-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, = 가스용기운송업자

## 출제유형

-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 의무가입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
- 체육시설업의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것은? - 골프연습장

## 출제유형

-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형태 운영 상품이 아닌 것은?  
- 생산물배상책임(단독상품임)

## 03. 특종보험의 이해

2문항

## 1. 도난보험

- 보상하는 손해
  - ▷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나 절도 강도에 의한 파손, 훼손, 오손 보장
- 보상하지 않는 손해
  - ▷ 보관장소를 **72시간 이상** 비워둔 동안에 생긴 손해, 도난손해가 생긴 후 **30일 이내** 발견하지 못한 손해,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손해 등

## 2. 레저종합보험

- 기간보험 : 골프보험, 수렵보험
- 구간보험 : 낚시보험, 스키보험(거주지 출발 ~ 거주지 도착시 종료)
- 보상하는 손해 ▷ 상해사고(사망/후유장해), 용품손해, 배상책임손해

## 3.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

- 재산손해(건물) + 신체상해손해(유아원생) +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
- ① 피보험자는 **유아원생만 해당**(교사, 원장은 별도의 특약)
- ② 유아의 상해사고시 의료비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음
- ③ 교육기간 생활 중 사고보상 - 통상적 경로의 등·하교 중 사고보상

## 4. 동산종합보험

- 기본계약(보상손해) : 화재 + 도난 + 파손 + 폭발 + 잡위험
  - ▷ 잡위험에 포함 = 우(雨), 담수유, 강설, 수해, 연기손해, **건물의 붕괴**, 누수 등
  - 잡위험에 제외** = 화재, **도난**, 파손, 폭발, 파열, **차량의 충돌, 접촉**
- 가입대상 제외 : 수용장소가 특정된 상품, 자동차, 선박, 동물/식물  
(단, 공장 내 설치된 **리스물건은 동산종합보험에 가입 가능**)

암기 Tip

구간보험 = 구 · 낚 · 스

- 용품분실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에 유의!





오답유형

- 유아원생의 가정생활 중 사고를 보상한다. (X)

출제유형

- 다음 중 동산종합보험의 잡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- ① 강설
  - ② 연기손해
  - ③ 건물의 붕괴
  - ④ 도난

 핵심요약

 Plus Tip!

## 5. 여행보험

- 1) 보통약관상 보장 : 상해사망보험금(정액보상), 후유장해보험금(정액보상)
- 2) 특별약관상 보장
  - 정액보상 : 질병사망보험금, 후유장해보험금
  - 실손보상 : 실손의료비보험금, 배상책임손해, 휴대폰 손해
    - (a)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
      - (국내) 상해/질병입원 의료비 : **5,000만원** 한도로 보상
      - 상해/질병통원 의료비 : 방문 **180회** 한도, 처방전 **180건** 한도로 보상
    - (b) 배상책임손해 ◦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손해배상금을 보상
    - (c) 휴대폰손해(개당, 조당, 쌍당 **회사별 한도를 적용**) ◦ 분실손해는 보상하지 않음
- 3) 특별비용 : 사고현지 왕복교통비(2명분의 항공료), 숙박비(구원자 2명분, 14일 한도), **구조수색비**, 이송비용

## 6. 컨틴전시 보험

- **스포츠시상보험, 날씨보험, 행사취소 보상보험**

## 04. 장기손해보험의 이해

4문항

## 1. 특별계정\*에 의한 운용

- 1) 장기손해보험의 **저축보험료**는 특별계정에서 운용 ◦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는 미포함
- 2) 특별계정 운용상품 : ① **장기손해보험(저축보험료)** ② **개인연금보험** ③ **퇴직연금보험**
  - ※ 나머지 상품은 일반계정\*으로 운용 : 자동차보험, 화재보험 등 대부분
  - \* 특별계정이란? 각 상품별로 따로 따로 자산운용
  - \* 일반계정이란? 여러 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자산운용

## 출제유형

- 해외여행보험의 상해입원의료비 최고 가입한도는? - 5,000만원
- 여행자보험의 보통약관 = 상해사망, 상해후유장해

## 출제유형

- 컨틴전시 보험이 아닌 것은? - 복권보험

## 출제유형

- 특별계정 운영상품이 아닌 것은? - 자동차보험
- 만기환급금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

핵심요약

Plus Tip!

2. 장기손해보험의 특징

- 1)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내인 것을 일반손해보험(= 단기보험), **3년 이상**인 것을 장기손해보험(보장 & 저축 겸비)이라 함
- 2) 계약 후 **10년 이상** 유지시 보험차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
- 3) **자동복원제도** : 1회 사고로 보험가입금액의 **80% 미만 사고**(80% 이하×)
- 4) **선납할인** : **3개월 이상** 선납시(**예정이율**)로 할인
- 5) **납입최고(유예)기간** : **납입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**
  - 미납시 납입최고기간 종료 다음 날 실효(미납해지)
  - 납입최고기간(유예기간) 중 사고는 보상함
  - 실효시 미납해지일로부터 **3년 이내** 부활 가능 → 연체보험료와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
- 6) 보험계약대출(약관대출) : **해약환급금 범위 내** 가능
- 7) **책임준비금** :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이행을 위해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**법정적립금** (약관 非보장 사고로 사망시 책임준비금 지급)

오답유형

- 한번의 사고로 보험금액의 80% 미만 시 자동복원된다. (X)
- 보험가액 X, 보험가입금액 O

암기 Tip

선납=예!(정이율)

3. 청구권 소멸시효

- 1) 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의 청구권(**보험금청구권,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**) 소멸시효 : **3년**
- 2) 보험회사의 청구권(**보험료청구권**) 소멸시효 : **2년**

- 계약자가 보험료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(O) → 3년이 지났다는 뜻!

4. 보험금 지급

가. 환급금 지급 → 모두 **3영업일 이내**

- 만기환급금, 해약환급금, 중도환급금, 철회/취소보험료 환급금
- 보험금 지급 지연시 이자계산
- 만기/해약환급금 :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청구일까지 기간 중
  - 1년 이내 = **평균공시이율의 50%**, 1년 초과 = **1%**
- 중도환급금 : 보험만기일까지 = 평균공시이율
  - 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 = 평균공시이율의 50%, 1년 초과 = 1%

오답유형

- 1년 초과시 예정이율의 1% (X)
- 2년 초과시 2% (X)

나. 보험금 지급 기간 → 종류별로 구분

- 1) 신체손해 보험금 : **3영업일 이내**
- 2) 배상책임 보험금 : **7일 이내**
- 3) 재산손해 보험금 : **7일 이내**

오답유형

- 신체손해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. (X)
- 배상책임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. (X)

다. **가지급보험금** :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**50% 상당액**을 먼저 지급

오답유형

- 배상책임 및 재산종합보험에서 일정한 조건에서 회사는 추정 보험금의 40%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미리 지급한다 (X)
- 상해·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은 가지급보험금을 미리 지급 하지 않고 보험사고 조사가 완료되고 보험금액이 확정된 후 확정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(O)

## 핵심요약

## Plus Tip!

## 05. 연금저축보험의 이해

2문항

## 1. 연금저축제도 도입의 근거가 되는 법률 : 소득세법시행령

## 2. 연금저축의 세제적격요건

- 가입대상 **연령제한 없음**
- **연간 1,800만원 한도**
- **5년 이상 납입**
- **55세 이후 인출**
- **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** 인출.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

## 3. 세액공제 → 소득공제 한도

- 1) 기본계약 : 퇴직연금 합산하여 세액공제한도까지 적용, **퇴직연금 300만원 추가공제** 가능
  - **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: 400만원(16.5%)**  
**1억 이하 : 400만원(13.2%)**  
**1억 초과 : 300만원(13.2%)**
- 2) 특약보험료 : 다른 보장성과 합산하여 연간 **100만원 한도**

## 4. 연금관련 세율

- 1) 연금소득세
  - **70세 이전(5%), 80세 이전(4%), 80세 이후(3%)** - 지방소득세 제외
- 2) 중도해지 **기타소득세 : 15%** (지방소득세 제외)
- 3)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**1,200만원**을 초과하는 경우 = 종합과세
- 4)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이외 형태로 수령시 = **기타소득세 3% ~ 5%**  
 - 사망, 해외이주, 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, 파산,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
- 5) 연간 연금수령한도 금액 산출식 : **(연금계좌의 평가액 / 11 - 연금수령연차) × 120 / 100**

5. 계약이체 →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받는 **회사 승인 필요**

- 1) 계약이체시 : 해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지가산세 부과 안 함
- 2) 계약이체의 제한
  -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간 이체
  - 대출 상환 전 보험계약
  -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보험계약 등



## 오답유형

- 연금저축보험의 법률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이다(X)

-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

## 출제유형

- 연금저축 연간 납입보험료가 100만원일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?  
= 12만원

## 암기 Tip

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5%  
= 중학교때 15등!



## 오답유형

- 계약이체 시 해지가산세를 납부한 후 계약을 이체할 수 있다. (X)



## 핵심요약

## Plus Tip!

## 06. 퇴직연금보험의 이해

## 1문항

## 1. 퇴직연금제도 도입 취지

- 근로자의 노후생활 소득재원 확보, 퇴직일시금의 생활자금화 방지, 퇴직금 수급권 보호강화

## 2. 퇴직연금제도 근거법규 및 가입대상

- 1) 근거법규 : **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**, 퇴직연금감독규정
- 2) 가입대상 :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

## 3. 퇴직연금제도의 종류

- 1) **확정급여형(DB)** = 퇴직시 수령할 **퇴직급여가 사전 확정**(사용자부담금 변동)
- 2) **확정기여형(DC)** = 사용자가 연간임금의 (1/12)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,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
- 3) **개인형퇴직연금(IRP)** =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해 **계속해서 적립·운용**하는 것

## 4. 퇴직연금 주요 내용

- 1)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대상 : 보험회사, 은행, 농·수·축협, 증권회사, 신용협동조합중앙회, 새마을금고연합회
- 2) 연금규약 작성 :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 
⇒ **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**
- 3) 근로자 교육 :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**매년 1회 이상** 가입자 대상 교육 실시
- 4) 부담금 납입 : 확정급여형(2021년 이후 : 100% 이상 사외적립)  
확정기여형(**100% 사외적립**)
- 5) 퇴직급여 수령 방법 : **일시금 또는 연금**
- 6) 근로자 퇴직연금납입액 세액공제 : 연간 700만원 한도

## 5. 퇴직연금 중도인출

- 1)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: **확정기여형(DC)** ⇒ 확정급여형은 불가능
- 2) 중도인출사유
  -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,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
  - **6개월 이상 요양**
  -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 5년 이내 파산선고,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
- 3) **인출순서 : 과세제외금액 → 이연 퇴직소득 → 그 밖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금액**

## 오답유형

-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취지가 아닌 것은?
- 연금저축보험 수요부진 (X)
- 국민연금 기금고갈 (X)

## 오답유형

- 중도명퇴 시 10년을 경과하지 않아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(X)
- 일시금으로 수령

## 출제유형

- 퇴직일시금 수령 시 소득공제 한도는?  
= 40%

## 출제유형

-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대상이 아닌 것은? = 저축은행, 우체국

## 출제유형

- 근로자 퇴직연금 납입액과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산하여 적용 시 세액공제 가능한 최대한도 금액은?  
= 700만원

## 오답유형

- 확정기여형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. (X)

## 07. 자동차보험의 이해

5문항

### 1. 자동차보험의 특성

- 1) 개인의 생활 안정, 기업의 경영 안전 도모
- 2) 피보험자를 경제적 파탄에서 구제
- 3) 사고예방, 산업자금조성 기여
- 4) 형사처벌 경감
- 5) **피해자 보호**
  -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음
  -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
  - **피해자 직접 청구권** ⇨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

### 2. 자동차사고에 대한 책임

가. 민사상의 책임 : 민법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· 민법과 자배법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)과의 관계 : 자배법은 **민법의 특별법**

구분	민법	자배법
배상책임의 주체	운전자, 사용자	<b>운행자</b>
책임형태	과실책임주의	<b>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</b>
입증 책임	피해자	<b>가해자</b>
손해배상 보장	없음	<b>피해자 직접청구권</b>

나. 형사상의 책임

-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우선 적용
- 1) **반의사불벌죄** : 형사합의시 처벌받지 않음
- 2) **보험가입의 특례** :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수 있는 경우, 형사합의가 없어도 공소제기 불가
- 3) 예외(형사처벌 대상) : 사망사고, 사고 후 도주(뺑소니), **12대 중과실 사고**
  - ※ 12대 중과실 사고
  - 신호위반 / 중앙선침범 / 규정속도 위반(**20km 초과시**) / 추월 위반 / 건널목 위반 / 횡단보도 사고 / 주취운전(**0.03% 이상**) / 무면허 / 개운발차 / 인도침범 / **스쿨존 사고** / 화물낙하방지 미조치

다. 행정상의 책임

- 범칙금액 통고처분이나 면허정지, 취소처분 등



#### 오답유형

- 자배법은 조건부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한다. (X) → 무과실책임주의 (O)
- 자배법에서 배상책임의 주체는 운전자이다. (X) → 운행자 (O)
- 자배법에서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. (X) → 가해자 (O)
-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**3면책**요건
  - ①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,
  - ②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,
  - ③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

#### 출제유형

-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의 3면책 요건이 아닌 것은?
  -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



#### 오답유형

- 제한속도 10km 초과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. (X)

핵심요약

Plus Tip!

3. 보험기간

- 1) 일반 : 보험기간의 **첫날 24시 ~ 마지막 날 24시**
- 2) 예외(처음 가입하는 자동차, 의무보험) : 보험료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

4.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

- 1) 대인배상 I : **책임보험(의무보험), 1인당(유한: 사망/부상/후유장해 = 1억 5천/3천/1억 5천)**
- 2) 대인배상 II : 대인 I 초과 손해배상(단, 사업용 : 1억 이상 의무가입)
- 3) 대물배상 : **2천만원 이상(의무보험)** / 대차료, 시세하락손해 有
- 4) 자기신체손해(자손) : 기명피보험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 / 과실상계 無
- 5) 자기차량손해(자차) : 대차료(렌트비) 無, 시세하락손해 無
- 6) 무보험차 상해 :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한도 +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자동차가입

5. 의무보험 → 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) 적용

가. 가입대상 : **자동차 및 9종 건설기계, 이륜차**

- 1) 비사업용 의무담보 : **대인 I + 대물(2천만원 이상)**
- 2) 사업용 의무담보 : **대인 I + 대인 II(1억원 이상) + 대물(2천만원 이상)**

나.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

- **국제연합(UN)군대 자동차, 미국군대(USA)자동차, 피견인 자동차,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**

다. 보상한도(대인 I) : 1인당 = 유한

- 1인당(사망/부상/후유장해)유한 = **1억 5천/3천/1억 5천**
- ※ 사망시 최고 1억 5천만원 ~ 최저 2천만원 (최저 1,500만원×)

라. 특징 : 가입의 강제 / 계약해지 제한 / 피해자 직접청구권 인정 / 인수거절 불가 /

양도시 자동승계(15일 한도) /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

※ 단, 계약해지 가능 : 자동차 양도, 말소등록(폐차), 중복계약

마. 정부보장사업 : 국토교통부 주관 / 12개 **손해보험사에 청구**

- 1) 대상 사고 : **뺑소니, 무보험차, 도난차**(뺑소니만 해당×)
- 2) **대인 I 만 보장**(차량사고 제외) → 물적사고는 보상하지 않음
- 3) 보장사업 청구기간 : 3년, 단 2005.11.17 이전은 2년(5년×)
- 4) 보장사업 제외 : 도로가 아닌 장소만 운행하는 차, UN군/미군 보유차, 가해자나 산재보험 등에서 보상받은 경우
- 5) **청구시 구비서류 : 교통사고 사실확인원(경찰서 발급)**,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
- 6) 교통사고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학금, 재활보조금도 있음

오답유형

- 의무보험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4시부터 시작한다. (X)

오답유형

-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1인당 1억원이다. (X)

오답유형

- 비사업용과 사업용 차량의 의무담보 한도는 동일하다. (X)
-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 I 에만 가입하면 된다. (X)
- 비사업용 = 자가용 + 관용
- 사업용 = 영업용

오답유형

- 자배법은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. (X) - 보유자(O)
- 자동차 의무보험의 피해자 보호기능 - 의무보험 가입강제 - 가불금제도 - 피해자 직접 청구권


**압기 Tip** 자동차 의무 보험 계약해지 가능 = 양·말·중복!


오답유형

- 차량양도시 임의보험은 15일 한도로 승계된다 (X) - 의무보험(O)

출제유형

- 기명피보험자 '갑'이 운전하는 차량에 친구 '을', '병'이 탑승 중 무보험차량의 충돌로 인한 사망 시 보상으로 옳은 것은? - '갑' 만 청구 가능

 핵심요약

 Plus Tip!

## 6. 종합보험(임의보험)의 특징 → (교통사고처리특례법) 적용

- 1) 가입여부 및 조건을 보험사와 계약자가 임의로 선택(거절 가능)
- 2) **대인배상 II를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된다.**
- 3) **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및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특약 위반시 보상되지 않는다**
- 4) 자동복원제도 있음 : 대인, 대물, 자손, 무보험차 상해, 자차(분손)
  - 단, 자차(전손)는 사고발생 시점에서 종료(자동복원 된다. ×)
- 5) **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** : 보험증권에 기재된 **보험가입금액 한도**로 보상
  - **대인 I, II, 대물, 자손까지 가입된 경우 가입 가능하며 1인당 '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' 한도로 지급**

(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대인배상 I 보장한도로 보상) (자차는 가입X)

- 4)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
  - ① 정의 :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생긴 대인 II, 대물, 자손을 보상(자차는 ×)
  - ② 적용대상 : 개인용/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자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자
  - ③ 다른 자동차의 범위 → (운전 가능한 동일 차종)
    - **승용차(소, 중, 대형, 다인승), 경·3종 승합, 경·4종 화물자동차**간 서로 운전 가능 (2종 승합차 ×)

## 7. 임의보험 가입대상

- 1) 개인용자동차보험 :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
- 2) 업무용자동차보험 :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가 아닌 비사업용 자동차(모든 버스, 화물차)
- 3) 영업용자동차보험 : 모든 사업용 자동차(개인택시, 개인용달 포함)

## 8. 피보험자의 범위

- 1) **기명피보험자** :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
  - **차량등록증 원부상의 소유자(차주)**
- 2) 친족피보험자 :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
- 3) **승낙피보험자** :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으로 사용 및 관리 중인 자
  - 승낙피보험자에서 제외(대인 II, 대물) : 자동차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(차량정비업자, 주차장업자, 급유업자, 세차업자, 판매업자, 탁송업자 등)는 제외
- 4) 사용피보험자 :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게 준하는 지위를 얻는 자
  -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
- 5) 운전피보험자 : 다른 피보험자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



## 오답유형

-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교통사고
- **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**
- **없었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 II, 대물, 자손, 자차까지 가입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. (X)**



## 오답유형

- **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허락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이다. (X)**

## 핵심요약

## Plus Tip!

## 9. 이륜자동차보험

- 1) 보험기간 1년 원칙 / 자기차량(오토바이)의 도난손해는 보상 안 함
- 2) 가정용·업무용 이륜차자동차가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 
(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)
- 3) 대인배상1, 대물배상의 경우 가입시 자기부담금(예: 0원, 25만원, 50만원, 75만원, 100만원 등)을 선택 가능
- 4) 회사별 보험료 차이(사용용도, 배기량, 연령) → (동일×)

## 10. 자동차의 구분

- 1) 승합자동차(버스) → 승차정원으로 구분
  - ① 1종(26인 이상) ② 2종(25인 이하) ③ 3종(16인 이하) ④ 경승합(10인 이하)
- 2) 승용자동차 → 승용(6인 이하) + 다인승(10인 이하)
  - ① 소형A(1,000cc 이하) ② 소형B(1,600cc 이하) ③ 중형(1,600~2,000cc 이하)
  - ④ 대형(2,000cc 초과) ⑤ 다인승 1종(전방車) ⑥ 다인승 2종(非전방차)
- 3) 화물자동차 → 적재정량으로 구분
  - ① 1종(5톤 초과) ② 2종(2.5톤~5톤 이하) ③ 3종(2.5톤 이하) ④ 4종(1톤 이하)

(9종 건설기계)  
\* 분묘차, 살수차, 청소차 (똥, 물, 청소) = 화물차  
\* 덤프트럭 = 9종 건설기계에 해당
- 4) 특정용도 자동차 → 아닌 것은? - (청소차=화물차)  
이동진료차, 이동도서관차, 방송중계차, 현금수송차, 채혈차, 소독차 등  
※ 구조, 장치의 변경시 최초 등록시 기준 따름(변경 후×)  
※ 승용겸 화물형 승용자동차는 (화물자동차)로 적용함  
※ 사업용 차량(영업용) 차량번호 : 55바3004(바 ~ 자 = 사업용)
- 5) 특수작업용 자동차 : 사람, 물건을 운반하는 구조를 갖지 않고 특수작업
- 6) 의무가입건설기계 : 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타이어식 굴삭기, 기중기 등
- 7) 일반건설기계 : 무한궤도식 건설기계, 타이어식 건설기계
- 8) 농기계 : 동력경운기, 농용트랙터, 콤바인

## 11.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산정

- 납입보험료 : 기본보험료 × 특약요율 × 가입자특성요율 × 특별요율 × 우량할인 × 불량할증 × 사고건수별 특성요율
- 1) 기본보험료 :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
  - 2) 가입자특성요율 : 보험가입 경력요율 ± 법규위반 경력요율
  - 3) 특약요율 :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계약에 적용하는 요율
  - 4) 특별요율 : 자동차의 구조, 용도, 적재물에 따른 특별위험을 적용
  - 5)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 요율 : 사고발생 실적, 손해에 따라 할인·할증
  - 6)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: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

## 오답유형

- 3종 승합과 경승합은 승차정원은 동일하나 배기량이 다르다. (X)

## 오답유형

- 승용차에는 6인 이하 자동차만 포함된다. (X)
- 승용차는 소형, 중형, 대형으로 구분한다. (X)

## 오답유형

- 콤바인은 화물자동차에 속한다. (X)



## 핵심요약



## Plus Tip!

## 12. 자동차보험료의 적용요소

가. 가입자특성요소 : 보험가입경력요소 ± 교통법규위반경력요소

- 기타 보험가입경력 인정 3가지(자기명의 보험가입과 동일)
  - ① 관공서, 법인체 등의 운전전문직 근무기간
  - ② 외국에서 보험가입경력
  - ③ 군대에서 운전병 근무기간

나. 사고유무에 따른 우량할인·불량할증요소(할인할증요소)

- 단체할인·할증 : 기준(영업용 10대 이상, 업무용 50대 이상) / 평가대상기간(역년 기준 3년)
- 개별할인·할증 : 평가대상기간(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)
  - ① 전계약과 갱신계약 동일조건
    - 개인용 : 피보험자(개피! / 관차!)
    - 업무용(관용) : 피보험자자동차 → (피보험자×)
    - 업무용(자가용), 영업용 :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자동차
  - ② 장기무사고 가입자 보호장치 있음 → (별도의 보호장치가 없다.×)

• 사고내용별 점수

- ① 사망(4점), 부상1급(4점), 2~7급(3점), 8~12급(2점), 13~14급(1점)
- ② 자기신체사고(1점) → (대인처럼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한다.×)
- ③ 물적사고(대물 + 자차): 할증기준 초과 = 1점, 할증기준 이하 = 0.5점
- ④ 가해자불명 자차사고는 중복 발생되어도 1점(중복시 합산한다.×)

다. 특별할증 : 이륜자동차보험은 적용하지 않음

라. 특약요소 : 대인 I 에는 적용하지 않음 (단, 관용차특약(50%)은 대인 I 에도 적용)

- ①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: 납입최고기간 30일, 부활기간 30일
- ② 가족운전한정 특약 : 기명피보험자 및 부모, 배우자, 자녀(형제×)
- ③ 운전자연령한정 특약 : 사고당시 만 연령 기준, 만 21 / 23 / 26 / 30 / 35 / 43세  
예시) 81년 4월 1일 생 / 만 30세 특약가입 후 2011년 4월 1일 사고 = 보상 안됨  
81년 3월 31일 생 / 만 30세 특약가입 후 2011년 4월 1일 사고 = 보상됨

마. 특별요소 : 대인 I 에는 적용하지 않음 (단, 관용차특약(50%)은 대인 I 에도 적용)

- 전시용, 견인차, 수반차, 위험물 적재, 기중기, 기계장치, 특수장치 등

암기 Tip

개인용 : 피보험자 / 관용 : 자동차  
= 개피! / 관차!

## 출제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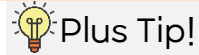
- 사고점수 1점을 고르시오
  - 부상 13~14급 / 물적사고 기준초과
- 할증기준 200만원 설정 후 대물 120만, 자차 80만이면?

☆ 0.5점

## 오답유형

- 개별할인할증의 평가대상기간은 역년기준 3년이다. (X)

## 핵심요약



Plus Tip!

## 13. 보험금 지급기준

## 가. 대인배상 I, II (사망보험금)

- ① 장례비 : 500만원
- ② 위자료 : **65세 미만 = 8,000만원 / 65세 이상 = 5,000만원**
- ③ 상실수익액 : 생활비 1/3 공제, 취업가능연한 (**65세**)
  - ※ 산식 = (월평균 현실소득액 - 생활비) × (사망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+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)

## 나. 대인배상 I, II (부상보험금)

- ① 구조수색비    ② 치료관계비    ③ 위자료
- ④ 휴업손해    ⑤ 간병비    ⑥ 기타 손해배상금
- ※ 휴업손해 : 1일 수입 감소액의 **85% 해당액**(전액을 지급한다. ×)
- ※ 간병비 : 상해구분상 1~5급에 해당하는 자,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

## 다. 대인배상 I, II (후유장해보험금)

- ① 위자료 :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
- ② 상실수익액
  - ※ 산식 = **월평균 현실소득액 × 노동능력상실률 × (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+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)**
- ③ 가정간호비 :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%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

## 라. 대물배상 ※ (아래 ③, ④는 자기차량손해에는 없음)

- ① 소지품 손해는 1인당 **200만원 한도** 실손보상(분실·도난 제외)(정액지급 ×)
- ② 수리비와 열처리도장료의 합계는 **120% 한도**(100% ×)
  - (다만, 내용연수가 지난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130% 한도)
- ③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
  - 출고 5년 이하 차량이 차량가액 20% 초과하는 경우 지급
  - **1년 이하 = 수리비의 20%, 1년 초과 ~ 2년 이하 = 수리비의 15%, 2년 초과 ~ 5년 이하 = 수리비의 10%**
- ④ 대차료(렌트비) : 비사업용 (수리 가능시 **25일(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 초과 시 30일)** 한도, 불가시 10일 한도)
  - 대차하지 않는 경우 **대여차 요금의 30% 보상**(보상 안한다. ×)
- ⑤ 휴차료 : 사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발생한 영업손해 지급
  - (1일 영업수입 - 운행경비) × 휴차기간
  -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의 기간, **30일 한정** 불가시 10일 한도
- ⑥ 영업손실 : 사업장이나 시설물을 파괴하여 상실된 영업손해액 보상
  - (**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음** / 30일 한도로 인정)

## 출제유형

- 출고 후 1년 6개월 경과된 2천만원 차량이 사고로 수리비가 800만원 발생한 경우 시세하락손해로 지급될 보험금은 얼마인가?  
= 120만원



## 핵심요약

마. 자손(자기신체 손해) :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음

- 쌍방과실사고의 경우
  -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지급
- 면책사항 : 고의, 계속적·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, 시험용·연습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어난 손해, 전쟁·혁명·내란·사변·폭동·소요(손해가 1만원 이하 발생 시 취급면책)

바. 자차(자기차량 손해) : 전부도난은 보상, 일부도난은 보상×

- 태풍, 홍수, 해일 등 자연재해 보상(ex.매미), 전손시 자동복원 되지 않음

## 14. 과실상계·손익상계·동승자감액·기왕증

가. 과실상계

- 1) 대인 I·II, 대물배상, 무보험차상해 담보 보험금 지급시 **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 후 지급**
  - But,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할 경우
    -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
  - 사망보험금은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2,000만원에 미달하면 2,000만원을 보상
- 2)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 담보 = (자기신체손해, 자동차상해)
  - 상해보험 성격을 가진 위 2개 담보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음

나. 손익상계

-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,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

다. 동승자감액

- 「승용차 함께 타기」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 감액하지 아니함

라. 기왕증

- 사고 전 증상은 보상하지 않음 ◦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

## 15. 음주, 무면허사고 자기부담금

- 1) 음주운전 : **대인 I = 1,000 만원, 대인 II = 1 억원, 대물 = 5,500 만원**
- 2) 무면허운전 : **대인 I = 300 만원, 대인 II = 1 억원, 대물 = 5,100 만원**

## 16. 가지급보험금 및 가불금

가. 가지급보험금

- 지급할 금액 한도 내에서 **50%** 지급
-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
  -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
나. 가불금

- 치료비의 경우(가불금) : 대인 I·II 보상한도 내 진료수가 전액 보상
- 치료비 외의 경우(가불금) : 책임보험금 범위 내 **손해액의 50% 지급**
  - \* 가불금 미지급시 보험회사에 과태료 부과(2천만원 이내)



## Plus Tip!



## 오답유형

- 대물배상에는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제도가 없다. (X)
-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. (X)

- 카풀(승용차 함께타기)은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.



## 오답유형

- 기왕증이 있더라도 치료관계비에 해당 하는 금액은 전액 보상한다. (X)
-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할 수 있다.



## 오답유형

-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추정보험금 전액을 선지급하는 제도이다. (X)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지급 보험금은 대물사고의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%가 지급되나,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우선지급금에는 대물배상에 대한 우선지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. (X)
- 보험사의 책임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. (X)



## 핵심요약

## Plus Tip!

## 01. 제3보험의 개요 및 특징

5문항

## 1. 제3보험 개요

- 1) 제3보험(Gray Zone) : **상해보험, 질병보험, 간병보험**
  - 2) 제3보험의 근거법 : **보험업법** (동시행령, 보험업 감독규정) 주의 상법 ⊗, 의료법 ⊗
  - 3) 손보사, 생보사 모두 운영 가능(겸영 종목)
- ※ **겸영가능 종목(보험업법의 규정)**
- 겸영가능 : **생명보험의 재보험, 제3보험의 재보험**, 대통령령에서 정한 제3보험의 부가종목(상해, 질병, 간병)
  - 겸영불가 : 손해보험의 재보험, 보증보험의 재보험

## 2. 제3보험 특징

- 1) 보상방법 : **실손보상, 정액보상 모두 가능**(손·생보 동일)
  - ① 실손보상 : 의료실비담보, 벌금담보 등
  - ② 정액보상 : 사망·후유장해 담보, 진단급여, 수술급여, 입원일당 급여 등
- 2) 제3보험의 가입제한(상법 제732조)
  - 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(**무효사유**에 해당)
    - 다만,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,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경우 가능
- 3) 제3보험은 **보장성에 한하여 개발** 가능(손·생보 동일)
  - 단, 손해보험사 **상해보험**(15년 이하)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이 가능
  - ※ 보장성이란? = 만기환급금 ≤ 기납입보험료
  - ※ 저축성이란? = 만기환급금 > 기납입보험료
- 4) 보상하지 않은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◦ **책임준비금을 지급**
- 5) **질병사망은 특별약관으로만 운영** 가능(기본계약에서 보통약관으로 운영 불가)
 

**손보사 질병사망(특약) 영위조건 3가지**

  - ① 보험만기 : **80세** 이하
  - ② 가입금액 : 개인당 **2억** 한도
  - ③ **보장성보험**의 요건을 충족

## 출제유형

- 제3보험과 관련 없는 것은?
  -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, 연금보험, 화재손해 등

## 오답유형

- 제3보험은 손해보험, 생명보험 및 보증보험의 세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보험이다. (X)
- 제3보험 근거법 : 상법(X), 의료법(X)
- 제3보험의 재보험은 겸영이 불가능하다.(X)

## 오답유형

- 질병치료비 특약은 80세까지만 가능하다. (X)
- 상해사망은 보험가입금액에 관계없이 2억 한도 보상한다. (X)
- 기본계약에서 상해사망 및 질병사망 담보가 가능하다. (X)

## 02. 상해보험의 이해

8문항

## 1. 상해보험의 특징

- 1) 상해사고의 요건 : **급격성 / 우연성 / 외래성**
- 2) **보험가입금액만 있고 보험가액은 없음** ⇨ 이유 : 신체의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
- 3) 사망보험금은 정액 지급(보험가입금액) (상실수익액을 지급한다. ×)
- 4) 원칙적으로 상해보험은 보험자대위가 없으나,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음
- 5) 피보험자의 동의 :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
⇨ **단체보험은 생략 가능**
- 6) 보험수익자 지정, 변경 권리 : **계약자에게 있음**(피보험자 동의 필요)  
※ 보험수익자 :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 수령자
- 7) 중과실 담보 : **다른 보험과 달리 중과실을 담보**(고의만 면책)
- 8) 상해보험의 종류
  - ① 정액보상 상품[상해사망, 상해후유장해, 상해진단비, 상해입원비, 상해수술비]
  - ② 실손보상 상품[**실손의료비(상해입원, 상해통원)**]

## 2. 보험료의 산출

- 직업, 직무를 감안하여 **3등급**으로 구분(연령과 관계없음)
- 보험료 크기 : **1급(사무직) < 2급(항공기정비공) < 3급(영업용운전자)**

## 3. 보상하지 않는 손해(보험회사 면책사항)

- 피보험자/보험수익자/계약자가 **고의**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, 임신·출산·산후기, 전쟁 내란 등 ⇨ 단, 천재지변(지진포함)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
- 직업·직무 및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생긴 아래의 행위로 인한 손해
  - ① 전문등반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
  - ② 모터보트, 자동차(오토바이)에 의한 경기, 시범, 흥행, 시운전 ⇨ 단, 공용도로상 시운전은 보장
  - ③ 선박승무원, 어부, 사공 등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
- 치과진료·한방치료에서 발생한 **비급여 의료비**, 건강검진, 영양제·비타민제,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등

## 4. 기본계약 보험금의 종류

- 1) 사망보험금 :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**직접결과로써 사망**한 경우 ⇨ **보험수익자**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  
※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: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고  
※ 관공서 수해, 화재, 재난으로 사망 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



## 오답유형

- 상해사고 요건 : 필연성(X), 내재성(X)
- 사망보험금은 실제 소득을 감안하여 지급한다. (X)
-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권리보다 우선한다. (X)
- 보험수익자를 지정, 변경할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있다. (X)

## 핵심요약

- 2) 후유장애보험금 :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상해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
- ※ **한시적 후유장애** : 5년 이상 지속시 해당 장애 지급률의 **20%**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
- \* 후유장애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째 의사의 진단으로 결정
  - \* 동일한 질병,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후유장애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
  - \*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 장애발생시 그 중 높은 장애율 적용

## 5. 실손의료보험 : 기본형 + 3개의 특약

- 1) 기본형 : 입원(5천만원 한도) / 통원(회당 30만원, 연간 180회 한도)
  - 상해입원형 및 상해통원형, 질병입원형 및 질병통원형의 총 4개의 담보종목
- 2) 특별약관(특약)
  - 특약 ① : 비급여 도수치료·체외충격파치료·증식치료 ⇨ 연간 350만원 한도, 50회 한도
  - 특약 ② : 비급여 주사료 ⇨ 연간 250만원 한도, 50회 한도
  - 특약 ③ :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(MRI/MRA) ⇨ 연간 300만원 한도, 횟수제한 없음

## 6. 상해입원의료비

- 1) 가입한도 : 하나의 상해당 최고 5,000만원 한도
- 2)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부담 금액의 40% 보상
- 3) 최초 입원일로부터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, 초과시 90일 지나면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
  - 단,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(365일 - 90일) 이내 보상한도 종료된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이 지나면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
- 4)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
- 5) 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 : 표준형(본인부담금 80% + 비급여 80%), 선택형 II(본인부담금 90% + 비급여 80%) 보상 ⇨ 단, 차액 10% 또는 20%가 연간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전액보상
- 6) 상급병실료 차액 : 차액의 50% 공제(1일 10만원 한도 보상)

## 7. 상해통원의료비

- 1) 1년 단위로 외래 연간 180회 한도(이틀에 한 번 꼴! 90회×)
- 2) 공제금액
  - 외래 : 의원(1만원)\*, 병원(1만 5천원)\*, 종합전문요양기관(2만원)\*
    - \* 표준형 : 의원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 / 병원 1만5천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을 공제
    - \* 선택형 : 의원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(※) 중 큰 금액 / 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(※) 중 큰 금액을 공제
    - (※) :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 10%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%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
  - 처방조제비 : 표준형(8천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) / 선택형(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)
- 3)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
  - 외래 방문 90회, 처방전 90건 한도로 보상(이틀에 한 번 꼴!)

## Plus Tip!

암기 Tip

오이 먹을래?

오답유형

- 상해보험의 후유장애보험금은 상실수익액을 고려하여 지급한다. (X)

오답유형

- 상해입원의료비는 최고 180일까지 보상한다. (X)
-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50% 한도로 보상한다. (X)

## 핵심요약

## Plus Tip!

## 8.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

## 1)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/재개

- 중지 ⇨ 신청방법 :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/ 신청기준 : 가입 후 **1년 이상 유지한 계약**
- 재개 ⇨ 신청방법 :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**보험회사에 직접 신청**  
재개심사 :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시 무심사 재개  
재개상품 : **보험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상품**  
재개불가 : 특약으로 가입한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후 주계약을 해지한 경우

## 2) 단체실손의 개인실손의료보험 전환

- 전환대상 : 전환신청 직전 **5년간 가입자** 중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자 (65세 이하)
- 신청방법 :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청
- 전환심사 : 직전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 & 10대 중대질환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 전환
- 전환상품 : **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상품**

## 9. 보험금 지급

- 1) 서류접수일로부터 **3영업일** 이내 지급(신체 : 3일, 배상 : 7일, 재물 : 7일)
- 2) 가지급보험금 : 보험사 추정보험금의 **50% 지급**
- 3) 지급기일 내 미지급시 **보험계약대출(=약관대출)이율로 이자 지급**

## 10. 교통상해보험

- 1) 교통수단의 종류 ⇨ 약관상 구분(자동차 vs 기타 교통수단)
  - ① 자동차 : 자동차, 이륜자동차(50cc 이상), **9종 건설기계**(덤프트럭 등)
  - ② 기타 교통수단 : 기차, 항공기, 선박, 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, 스쿠터, 9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일반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 
※ 보상 않는 손해 : **하역작업 중, 정비 중, 청소 중, 작업기계로 사용 중**  
※ 보상하는 손해 : 운행 중, 탑승 중, 승하차 하던 중, 승강장 내 대기 중
- 2) 휴일 교통상해 : **토요일, 일요일, 법정공휴일, 근로자의 날**
  - ① 책임개시 시기와 종기 : **첫날 0시 ~ 마지막 날 24시**
  - ② **대중교통수단 제외 : 전세버스, 렌터카(항공기=대중교통)**
- 3) 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보험 : 이륜자동차 운행 중 사고는 제외

## 11. 단체상해보험

- **1종(급여단체)** : 관공서, 기업체 (근로자, 공무원)
- **2종(법정단체)** : 비영리법인 (리 → “2종”으로 연결)
- **3종(규약단체)** :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, 일괄관리 가능

## 암기 Tip

일반보험은 정기예금이율 /  
장기보험은 약관대출이율  
⇒ 일정 / 장약!



## 오답유형

- 비영리법인과 동업자단체는 3종단체이다. (X)
- 단체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. (X)



## 03. 질병보험의 이해

## 3문항

## 1. 질병보험의 특징 :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음

- 1)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: **제7차 개정**, 통계청에서 고시
  - 제7차 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
- 2) 보험나이 계산 : 계약일 현재 만연령 기준
  - **6개월 미만은 버리고,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** → (30세 10개월 = 31세)
  - ※ 질병보험은 연령별로 보험료 차이 / 상해보험은 직업/직무별로 보험료 차이
- 3) **대기기간(90일)설정** : 암담보 특약, 설정이유 = **역선택 방지**
  - 대기기간 중 암진단 확정시 **무효**
  - ※ 단, 상피내암, 경계성종양, 기타피부암은 대기기간 설정 없음
  - ※ 15세 미만자는 암보험에서 대기기간 설정 못 함(2006년부터 시행)

## 2.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

- 1) 피보험자/보험수익자/계약자가 **고의**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- 2) 치과치료·한방치료에서 발생한 **비급여 의료비**
- 3)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에 의해 사후에 환급이 가능한 의료비
- 4) **건강검진, 예방접종, 인공유산**
- 5) 단순피로, 권태, 주근깨, 다모, 무모, 백모증, 딸기코 등
- 6) **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**
- 7)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(**HIV**)**감염으로 인한 치료비**
  - ※ 보상하는 손해 : 청약일 이전 진단된 질병이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동일질병으로 추가진단 및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**5년 경과 이후에는 보상 가능 (3년 X)**

## 3. 정액보상 vs 실손보상

- 1) 정액보상 : 질병사망보험금 / 후유장해보험금 / 진단보험금 / 입원보험금 / 수술보험금 / 간병보험금 등
  - ① 질병사망보험금 :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◊ **질병보험 80% 이상 후유장해 시 사망보험금 지급**
  - ② 후유장해보험금 :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될 경우 (한시적 장해 :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**5년 이상** 지속될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**20%**를 장해지급률로 함)
  - ③ 입원급여금 : 보험기간 중 **2회 이상 입원 시**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**입원일수를 합산함** (단, 퇴원 후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)
  - ④ 수술급여금 :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(단,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)
- 2) 실손보상 : 질병입원의료비 / 질병통원의료비

## 출제유형

- 생년월일이 1971.6.1이고, 계약일이 2011.10.1인 경우 가입연령은?  
→ 40세 (40세 4개월이므로 6개월 미만인 4개월은 버림)

## 출제유형

- 16세 고등학생은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 (○)



## 4. 질병입원의료비

- 1) 가입한도 : 하나의 질병당 최고 **5,000만원** 한도
- 2)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부담 금액의 **40% 보상**
- 3) 최초입원일로부터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, 초과시 **90일**이 지나면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
  - 단,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(365일-90일) 이내 보상한도된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**365일**이 지나면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
- 4)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로부터 **180일**까지 보상
- 5)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로 의료비 감면시 감면 전 의료비 기준으로 지급

## 5. 질병통원의료비

- 1) 1년 단위로 외래 연간 **180회 한도**(이틀에 한 번 끝!)
- 2) 공제금액 : 의원(1만원)\* / 병원(1만 5천원)\* / 전문요양기관(2만원)\*
  - \* 표준형 : 의원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 / 병원 1만 5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
  - \* 선택형 : 의원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(※) 중 큰 금액 / 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(※) 중 큰 금액
  - (※) :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 10%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%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
- 3) 처방조제비 공제금액(선택형) : 건당 **8천원**, 최고 **30만원** 한도
- 4)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로부터 **180일**까지 보상 ⇨ **외래 방문 90회, 처방전 90건** 한도로 보상
- 5)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 2회 이상 통원치료시 “1회 외래, 1건 처방”으로 간주

## 6. 노후 실손의료보험

- 1) 65세 이상도 보험가입 가능
- 2) 상품구조 : **의료비(질병의료비, 상해의료비) + 2개 특약(요양병원의료비 특약, 상급병실보장 특약)**
- 3) 자기부담률 : 급여(20%), 비급여(30%)
- 4) 보장한도 : 입원(통원과 합산하여 연간 1억원), 통원(회당 100만원)
- 5) 변경주기 : 보험료(**1년마다** 갱신) / 상품구조(**3년 후** 재가입) ⇨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**15년 후** 재가입

## 7.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

- 1) 가입심사 요건을 축소하여 유병력자도 가입이 수월
- 2) 상품구조 : **기본형(상해입원의료비, 상해통원의료비, 질병입원의료비, 질병통원의료비)**
- 3) 자기부담률 : 급여(30%), 비급여(30%)
- 4) 보장한도 : 입원(5천만원), 통원(회당 20만원)
- 5) 변경주기 : 보험료(**1년마다** 갱신) / 상품구조(**3년 후** 재가입)



## 8. 치명적 질병보험(CI보험)

- 1) 중대한 암, 뇌졸중, 심근경색 등 “치명적 질병(Critical illness)”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, 간병비,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품
- 2) **잔여수명 6개월 이하 시 사망보험금의 50% 선지급 제도**
- 3)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차회부터 보험료 납입 면제제도

## 9. 어린이보험

- 1) 자녀의 출생 이후에 야기된 질병·상해로 인한 의료비, 배상책임 등을 보장
  - 가입연령 : 0세 ~ 15세
- 2) 태아가입 특별약관 : 태아기(출산 시)에 원인이 야기된 위험을 보장 → **태아보험**

## 10. 치아보험

- 1)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
  - 가입연령 : 0~75세(보험회사별로 상이)
  - 만기형과 갱신형으로 구분
- 2) 갱신형은 갱신시 보험료가 조정됨,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을 운영

# 04. 간병보험의 이해

## 1문항

### 1. 장기간병보험

- 1) 간병보험의 정의 : **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** (=장기요양보험)
- 2) 장기요양급여금 지급 :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**1~4등급의 장기요양등급**을 판정 받은 경우 (일시지급형, 매월지급형 등)
- 3) 치매간병비 지급 : 「**중증치매상태**」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**일정기간 지속 시** 치매간병비 지급
  - ※ 「중증치매상태」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, 이로 인하여 「인지기능의 장애」가 발생한 상태
- 4) **보상하지 않는 손해**
  - ① 피보험자가 **고의**로 자신을 해친 경우
  - ② 보험 수익자가 **고의**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  - ③ 계약자가 **고의**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  - ④ 피보험자의 임신, 출산, 산후기
  - ⑤ **전쟁, 혁명, 알코올중독**, 습관성 약물 복용,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

### 2.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

- 1) 가입자를 대신하여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
  - 필요한 이유 :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 발생
  - 「**보험계약자 = 피보험자 = 보험수익자**」의 경우 해당
- 2) 대리청구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
- 3) **보험회사**에 연락하여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